

학생부종합전형운영규정

2022.04.27.제정 2024.04.08.일부개정

<입학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6조(입학전형)에 의거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생부종합전형” 이라 함은 성적 위주의 정량적 학생선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설립 이념, 학생의 잠재력 또는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전형요소를 통해 학생의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③ “입학사정관” 이라 함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업무를 전담토록 임용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입학사정관의 구분)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수사정관: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 중 상시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연구 및 평가 등 제반업무 전담을 목적으로 임용된 자(개정 2024.4.8.)
2. 전임입학사정관: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연구 및 평가 등 제반업무 전담을 목적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3. 위촉입학사정관
 - 가. 내부: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
 - 나. 외부: 입학전형업무 유경험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 본 대학교에서 위촉한 자

제4조(입학사정관의 기능) 입학사정관은 사정관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학생부종합전형 기획 및 관리
2.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3.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사정
4.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기획 및 운영
5.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전형결과 분석 및 기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제반 업무

제5조(임용 및 계약) 입학사정관 임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6조(복무 및 기밀유지) ① 입학사정관은 불임의 본 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본 대학교 복무규정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입학 관련 제반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수당, 활동비, 성과급) 교수사정관, 위촉입학사정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수당,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전입입학사정관에 대하여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활동비,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전형결과와 관련된 수험생 및 학부모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입학홍보처는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②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입학홍보처장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이때, 재평가의 결과는 기 발표한 해당전형 및 모집단위 타 수험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겸한다.

제10조(법률자문회의) ① 입학절차 및 결과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리적 판단 자문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률자문위원은 법학과 교원 및 법률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 대학교 학칙 등에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본 윤리강령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전형을 실

시험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뢰로운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책무성을 규정하고, 입학사정관의 기본 윤리를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대학의 책무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구성 및 학생 선발

하나, 대학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구성한다.

하나, 대학은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를 평가하여 선발하며,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자 노력한다.

하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정보의 제공

하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전형취지, 지원자격, 평가기준, 평가방법, 제출 서류 등)을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 모집요강 및 전형 안내자료 등에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

하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학별 설명회, 대입정보포털(adiga)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 공정성 및 신뢰성

하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할 인재상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대학전형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하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하나,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에 걸쳐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하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를 공개하여 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전문성 확보

하나, 대학은 전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대학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입학사정관의 책무

입학사정관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입학사정관’은 전임사정관(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 위촉사정관(내부위촉사정관, 외부위촉사정관)을 포함한다.

○ 전형 홍보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학 상담을 실시할 경우 언행의 품위와 적절성을 유지하며, 모든 고교 및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고교 방문이나 입학 상담에 대한 대가로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학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 및 교사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입시 및 평가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대학 전체의 정책방향인 것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 학생 선발 및 평가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및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 시 명확한 평가기준을 가져야 하며, 공정한 시각을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평가 시 얻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와 관련한 윤리적·법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인은 동명대학교 건학이념, 교육철학 및 비전에 부합하는 우수학생 선발의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모든 업무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입학사정관 윤리 강령에 명시된 윤리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학사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그 직에 맞는 품위를 유지한다.
2. 입학사정관은 건학이념의 실현과 잠재능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전문가로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직무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4. 입학사정관은 대입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5. 입학사정관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대학의 기밀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6. 입학사정관은 모든 지원자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해야 하며,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사정관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8. 입학사정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라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아니한다.

20 . . .

동명대학교 입학사정관_____ (서명)

동명대학교 총장 귀하